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77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으로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8조”를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5.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7.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 법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나.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0.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1.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4.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	-
15.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0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